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개정전후대비표

< 2023.6.1. 중수본 의료대응·재택치료팀 >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1	<p>I.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p>	<p>■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위기단계 하향 조정(6.1) 관련 안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검사·약는 치료제 처방 등) - 기존 '재택치료'는 '자율치료'로, '재택환자'는 '자율치료자'로 용어 변경 * 자율치료(자)는 확진자 중 격리할 여자와 격리하지 않는 자 모두 포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약국 책임하에 환자·중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코로나19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에 따라 변경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급)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조건 허용, (병원급)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신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 및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제외, 기존 재택치료 수가*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 (전화상담병의원) 전화상담·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p>※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여부 불문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수행</p>	<p>■ 위기단계 하향 조정 (6.1)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일괄 안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권고 전환 -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재택치료'→'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실시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1	<p>○ (대상 기관) '22.6.30. 이전에 ①호흡기전담 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②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③외래진료센터, ④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 종전 기관 및 적용 지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종전·현행</th> <th>종전 지침</th> <th>변경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호흡기전담 클리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제 운영지침」 제2·1판(22.3.14.)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 </td> </tr> <tr> <td>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2·1판(22.3.14.)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td> </tr> <tr> <td>외래진료센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td> </tr> <tr> <td>전화상담 병·의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22.8.1.)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td> </tr> </tbody> </table> <p>※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현행 지침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 그 외 코로나19 방역관리, 진료 및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하여 규정한 지침</p>	종전·현행	종전 지침	변경 지침	호흡기전담 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제 운영지침」 제2·1판(22.3.14.)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2·1판(22.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외래진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전화상담 병·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2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p>○ (대상 기관) '22.6.30. 이전에 ①호흡기전담 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②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③외래진료센터, ④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p> <p>*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6.1)</p> <p style="text-align: center;">< 종전 기관 및 적용 지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종전·현행</th> <th>종전 지침</th> <th>변경 지침</th> </tr> </thead> <tbody> <tr> <td>호흡기전담 클리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제 운영지침」 제2·1판(22.3.14.)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 </td> </tr> <tr> <td>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2·1판(22.3.14.)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td> </tr> <tr> <td>외래진료센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td> </tr> <tr> <td>전화상담 병·의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22.8.1.)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td> </tr> </tbody> </table> <p>※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현행 지침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 그 외 코로나19 방역관리, 진료 및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하여 규정한 지침</p>	종전·현행	종전 지침	변경 지침	호흡기전담 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제 운영지침」 제2·1판(22.3.14.)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2·1판(22.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외래진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전화상담 병·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2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에 따라 시행 안내</p> <p>■ 적용 지침 변경 등 반영하여 삭제 및 수정</p>
종전·현행	종전 지침	변경 지침																															
호흡기전담 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제 운영지침」 제2·1판(22.3.14.)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2·1판(22.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외래진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전화상담 병·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2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종전·현행	종전 지침	변경 지침																															
호흡기전담 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제 운영지침」 제2·1판(22.3.14.)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5판(21.12.)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제2·1판(22.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외래진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전화상담 병·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2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동 (종전 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등 수행)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2	<p>2. 신청 요건 * 신규기관부터 적용</p> <p>○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원, 병원*(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p> <p>* 신규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우선 신청 권고</p>	<p>2. 신청 요건 * 신규기관부터 적용</p> <p>○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원, 병원*(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p> <p>* 신규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우선 신청 권고</p>	<p>■ 거점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 운영 종료로 삭제</p>
	<p>나. 인력 기준</p> <p>1) 의사인력(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상근</p> <p>< 의사인력 관련 안내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과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만 가능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u>코로나19 관련 질환</u> 대면/비대면 진료는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u>비코로나19 관련 질환</u> 대면/비대면 진료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외상 등 	<p>나. 인력 기준</p> <p>1) 의사인력(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상근</p> <p>< 의사인력 관련 안내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과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만 가능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u>코로나19 관련 질환</u> 대면/비대면 진료는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u>비코로나19 관련 질환</u> 대면/비대면 진료는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외상 등 	<p>■ '다. 운영기준'의 표와 내용 중복으로 삭제</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3	<p>다. 운영 기준</p> <table border="1"> <tr> <td>④</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비대면 진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비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td> </tr> </table> <p>2)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형) 중 ①, ②, ③, ④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p> <p>*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p>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비대면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비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p>다. 운영 기준</p> <table border="1"> <tr> <td>④</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비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비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확진자 비대면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 </td> </tr> </table> <p>2)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형) 중 ①, ②, ③, ④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p> <p>* 의료기관 사정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p>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비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비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확진자 비대면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안내</p>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비대면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비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비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비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확진자 비대면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II. 기본 운영 방향			
5	<p>< 진찰·코로나19 검사·진료 프로세스 ></p> <p>대상자: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처방·치료 → 입원연계</p> <p>발발 호흡기 유증상자</p> <p>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전문가용 RAT (필요 시 기본 진찰·상담 등 진행), 음성, 양성</p> <p>PCR (현장 의료기관 or 선별진료소)</p> <p>음성 → 일반진료</p> <p>양성 → 일반진료 병상 (중대 병리),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전담치료 병상 or 일반격리 병상</p> <p>선별 진료소: PCR, 양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p>	<p>< 진찰·코로나19 검사·진료 프로세스 ></p> <p>대상자: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처방·치료 → 입원연계</p> <p>발발 호흡기 유증상자</p> <p>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전문가용 RAT (필요 시 기본 진찰·상담 등 진행), 음성, 양성</p> <p>PCR (현장 의료기관 or 선별진료소)</p> <p>음성 → 일반진료</p> <p>양성 → 일반진료 병상 (중대 병리), 먹는 치료제 처방, 자율치료, 전담치료 병상 or 일반격리 병상</p> <p>선별 진료소: PCR, 양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p>	<p>■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른 변경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 자율치료 - 확진자는 일반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p>○ (목적)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p> <p>○ (역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재택치료·입원 등 수행</p>	<p>○ (목적)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p> <p>*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도 가능하나, 가급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p> <p>○ (역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자율치료·입원 등 수행</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III.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6	<p>1. 방문·접수</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등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공개</p> <p>○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확진자 포함)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도보·개인차량 권장)</p> <p>-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방문 즉시 의료진에 통보</p> <p>○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①환자의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및 고위험군 여부, ②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③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p>	<p>1. 방문·접수</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등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공개</p> <p>○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확진자 포함)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도보·개인차량 권장)</p> <p>-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방문 즉시 의료진에 통보</p> <p>○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①환자의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및 고위험군 여부, ②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③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p>	<p>■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으로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에 따라 방문 안내 삭제</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 환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하되, 다른 장소 경유 금지 <p>○ (대기) 환자 대기공간은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1미터 이상) 유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021.10.27.), 중수본 '알기 쉬운 감염예방관리지침(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 진료 중심)'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 권장 **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p>○ (대기) 환자 대기공간은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1미터 이상) 유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의원급) 관련 안내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의원급) 관련 안내
7	<p>2. 진찰</p>	<p>2. 진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의원급) 관련 안내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7	<p>3. 진단검사 : 전문가용 RAT, PCR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4중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실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p>3. 진단검사 : 전문가용 RAT, PCR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실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의원급) 관련 안내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발생 신고)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발생 신고)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내용 반영
9	<p>< 전문가용 RAT 양성인 경우 대응 요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가용 RAT 양성자에게 확진 사실과 격리 의무 발생 및 재택치료 주의 사항 등을 안내. 지도, 안내문 배부(서식1 활용) * 격리통지는 보건소가 수행 	<p>< 전문가용 RAT 양성인 경우 대응 요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가용 RAT 양성자에게 확진 사실과 격리 권고 및 자율치료 주의 사항 등을 안내.지도(안내문(서식2 활용) 배부 등) * 확진 및 격리 권고 통지는 보건소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배부 권장 및 변경 내용 반영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10	<p>▶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p> <p>*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p> <p><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건소 선별진료소</th> <th>호흡기환자진료센터</th> <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 </tr> </thead> <tbody> <tr> <td>PCR 검사 대상</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td> <td></td> </tr> <tr> <td>비용</td> <td>무료</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td> </tr> <tr> <td>신속 항원 검사 가능</td> <td>-</td> <td>·검사 희망자</td> <td>·검사 희망자</td> </tr> <tr> <td>비용</td> <td>-</td> <td>·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2-)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td> <td>·그 외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담면</td> </tr> </tbody> </table> <p>[3] 전문가용 RAT 또는 PCR 검사 후 안내사항</p> <p>○ (격리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 및 주의사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격리 및 재택치료 개시됨을 안내 (안내문 배부, 서식1)</p>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신속 항원 검사 가능	-	·검사 희망자	·검사 희망자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2-)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담면	<p>▶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100원, 의원) 발생 가능)</p> <p>*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p> <p><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건소 선별진료소</th> <th>호흡기환자진료센터</th> <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 </tr> </thead> <tbody> <tr> <td>PCR 검사 대상</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td> <td></td> </tr> <tr> <td>비용</td> <td>무료</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td> <td>·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td> </tr> <tr> <td>신속 항원 검사 가능</td> <td>-</td> <td>·검사 희망자</td> <td>·검사 희망자</td> </tr> <tr> <td>비용</td> <td>-</td> <td>·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2-)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td> <td>·그 외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담면</td> </tr> </tbody> </table> <p>[3] 전문가용 RAT 또는 PCR 검사 후 안내사항</p> <p>○ (격리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 및 주의사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격리 및 재택치료 개시됨을 안내 (안내문 배부, 서식1)</p>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신속 항원 검사 가능	-	·검사 희망자	·검사 희망자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2-)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담면	<p>■ 현행 내용 반영</p> <p>■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른 변경 반영 및 삭제</p>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신속 항원 검사 가능	-	·검사 희망자	·검사 희망자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2-)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담면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감염확산사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용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지역본인부담) * ④⑤유증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 비담면																																								
신속 항원 검사 가능	-	·검사 희망자	·검사 희망자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2-) - 5천원(의원) 7천 원(비) 발생 *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유증상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당(비) 무료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담면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11	<p>○ (귀가방법) RAT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후 귀가 시 안내사항</p> <p>가. RAT 또는 PCR 검사를 한 환자는 자차, (방역) 택시 이용(대중교통 이용자체)</p> <p>나.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 하여 귀가</p> <p>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p> <p>※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 치료 안내서(8판)」 참고</p> <p>○ (진료 내용) 의료기관별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진료(대면, 비대면) 실시</p> <p>* 대면진료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그 외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외상 등도 가능</p>	<p>○ (귀가방법) RAT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후 귀가 시 안내사항</p> <p>가. RAT 또는 PCR 검사를 한 환자는 자차, (방역) 택시 이용(대중교통 이용자체)</p> <p>나.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 하여 귀가</p> <p>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p> <p>※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 치료 안내서(8판)」 참고</p> <p>○ (진료 내용) 의료기관별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진료(대면, 비대면) 실시</p> <p>* (대면진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을 실시, 코로나19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그 외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외상 등도 가능</p> <p>*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가능(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제외)</p>	<p>■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내용 반영</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IV.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방안			
12	<p>◆ 기존 진단검사, 처방, 입원연계 체계를 준용하되,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입원연계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및 취약시설 대응 방안을 종합하여 안내</p> <p>□ (절차) 진단검사(호흡기환자진료센터·선별진료소), 환자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판별 및 관리하고,</p> <p>○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기관 내 또는 지역 사회 내 의료기관 활용하여 고위험군 관리</p> <p>□ (향후 추진방향) 대면진료 중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원스톱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p>	<p>◆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확진 이후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p> <p>□ (절차) 진단검사(호흡기환자진료센터·선별진료소), 환자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판별 및 관리하고,</p> <p>○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기관 내 또는 지역 사회 내 의료기관 활용하여 고위험군 관리</p> <p>□ (향후 추진방향) 대면진료 중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원스톱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p>	<p>■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삭제</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IV.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방안			
13	<p>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체계도</p> <p>1. 지역사회</p> <p>※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 발현·악화에 따른 일반적 절차에 따라 병상 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7-2판)」 참조</p> <p>○ (사전 준비사항) 지역 내 신속히 활용 가능한 의료·행정자원</p> <p>-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보건소, 재택치료 추진단, 시·도119 등 비상연락망(핫라인)을</p>	<p>■ (삭제)</p> <p>1. 지역사회</p> <p>※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 발현·악화에 따른 일반적 절차에 따라 병상 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7-2판)」 참조</p> <p>○ (사전 준비사항) 지역 내 신속히 활용 가능한 의료·행정자원</p> <p>-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보건소, 재택치료 추진단, 시·도119 등 비상연락망(핫라인)을</p>	<p>■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삭제</p> <p>■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삭제</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p>구축하고, 지역별 거점전담병원 및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상시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신속하게 이송 가능한 복수의 의료기관 및 다양한 이송수단(보건의, 119구급대 등)을 사전 지정·확보 - 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등 운영 현황 파악 	<p>구축하고, 지역별 거점전담병원 및 일반격리병상 현황을 상시 공유</p> <p>지역별로 신속하게 이송 가능한 복수의 의료기관 및 다양한 이송수단(보건의, 119구급대 등)을 사전 지정·확보</p> <p>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등 운영 현황 파악</p>	
14	<p>○ 코로나19 진단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검사)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PCR 검사 이후 확진 시 신속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안내 강화 * ① (귀가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귀가 시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유의사항 등 담은 안내문 제공 → 【서식5】 참고 ② (확진 통보 시) 확진자 격리통지 문자에 대면 진료 사항 안내 · 특히, 사전 전자문진 시 만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지역 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명단과 유의사 	<p>○ 코로나19 진단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검사)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PCR 검사 이후 확진 시 신속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안내* * ① (귀가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귀가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유의사항 등 담은 안내문 제공 가능 → 【서식4】 참고 ② (확진 통보 시) 확진자 격리통지 문자에 대면 진료 사항 안내 · 특히, 사전 전자문진 시 만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지역 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와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삭제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p>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용·배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격리통지 문자 안내 문구 (예시)</p> <p>◆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용 RAT)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①진단검사 통한 양성판정 직후 의사의 문진을 통하여 고위험군에 포함 ○ (고위험군 진료·치료) 재택치료 도중 발열 등 증상 발현·악화 시 대면·비대면 진료 실시 - 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 시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 비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전화상담 등 수행,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p>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용·배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격리통지 문자 안내 문구 (예시)</p> <p>◆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용 RAT)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 통한 양성판정되면 의사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 여부 판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 (고위험군 진료·치료) 자율치료 도중 발열 등 증상 발현·악화 시 대면·비대면 진료 실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 시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 비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전화상담 등 수행,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 입원연계) 재택치료 입원절차에 준하여 즉시 사전 확보된 의료기관으로 입원 의뢰 및 이송 조치 - 재택치료추진단 및 시·도 배정반을 통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배정 및 입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 입원연계) 재택치료 입원절차에 준하여 즉시 사전 확보된 의료기관으로 입원 의뢰 및 이송 조치 — 재택치료추진단 및 시·도 배정반을 통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배정 및 입원 조치 	
15	<h3>2. 요양병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검사) 요양병원 내 의료인이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 (환자분류) 주치의가 확진환자의 중증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원내치료 또는 전원 여부 결정 ○ (환자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방대본)에 따라 치료제 투여 및 기저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는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시 1일 내에 치료제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 ○ (환자전원) 초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원내치료 중 증상이 악화된 환자는 	<h3>2.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검사) 병원 내 의료인이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 (환자분류) 주치의가 확진환자의 중증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원내치료 또는 전원 여부 결정 ○ (환자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방대본)에 따라 치료제 투여 및 기저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는 각 병원 확진자 발생 시 1일 내에 치료제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 ○ (환자전원) 초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원내치료 중 증상이 악화된 환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유사 시설 통합 안내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p>신속히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 등에 전원 조치</p> <h3>3. 요양시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진단검사)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활용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치료) 요양시설 내에서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진료)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의료체계 활용 병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로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 - (구성)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현황) 223개 의료기관(271개 팀) 지정·운영 중 - (기간) 지정일로부터 12.31일까지(추후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의료진 	<p>신속히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 등에 전원 조치</p> <h3>3. 요양시설 및 정신시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설 내 간호인력 활용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치료) 시설 내에서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진료)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의료체계 활용 병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로 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 - (구성)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현황) 요양(229개 의료기관(275개 팀)), 정신(28개 의료기관(30개 팀)) 지정·운영 중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의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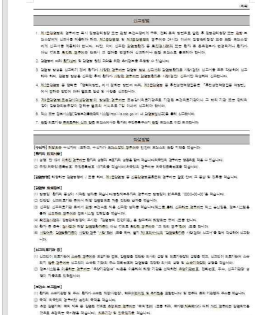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p>판단 및 환자 동의 하에 병상배정에 신속히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토록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4. 정신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검사) 정신병원 내 의료인이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 (환자분류) 주치의가 확진환자의 중증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원내치료 또는 전원 여부 결정 ○ (환자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방대본)에 따라 치료제 투여 및 기저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는 정신병원 확진자 발생 시 1일 내에 치료제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 ○ (환자전원) 초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원내치료 중 증상이 악화된 환자는 신속히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 등에 전원 조치 </div>	<p>판단 및 환자 동의 하에 병상배정에 신속히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토록 조치</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5. 정신시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신시설 내 간호인력 활용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치료) 정신시설 내에서 대면 진료 및 비대면진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진료) '정신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실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의료 체계 활용 병행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로 정신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 - (구성)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현황) 28개 의료기관(30개 팀) 지정·운영 중 - (기간) 지정일로부터 12.31일까지(추후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div> - (비대면진료)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의료진 판단 및 환자 동의 하에 병상배정에 신속히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토록 조치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V. 관련 수가 안내			
17	<p>관련 수가 및 본인부담률 (의원 기준)</p> <p>* 의원 초진 진찰료 적용 (환자가 동네 의원을 자주 이용해도 절환이 아니면 초진 진찰료 적용) ** (재택치료 전화상담) 진찰료 및 전화상담관리료 상정(의원급 초진 기준 금액)</p> <p>- (확진 당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RAT 확진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확진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12,130원, 의원)' 산정</p>	<p>관련 수가 및 본인부담률 (의원 기준)</p> <p>* 의원 초진 진찰료 적용 (환자가 동네 의원을 자주 이용해도 절환이 아니면 초진 진찰료 적용) ** (전화상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 *** (대면진료)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일인부 제외 만 6세 이상 기준) 산정</p> <p>- (확진 당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RAT 확진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확진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12,380원, 의원)' 산정</p>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영 및 수가 현행화</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18	<p>○ (확진자진료) 확진자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면진료 실시</p> <p>- (전화상담) 재택치료 환자는 진찰료 및 전화상담관리료를 산정</p> <p>* (의원급 초진 기준 금액) 진찰료 16,970원, 전화상담관리료 5,090원</p> <p>** 의료상담센터의 경우 야간·공휴일 등에 대해 가산 수가 적용</p> <p>- (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로 대면 진료 시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24,260원, 의원) 산정</p> <p>* 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당일,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불가</p>	<p>○ (확진자진료) 확진자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면진료 실시</p> <p>- (전화상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p> <p>*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지원 총료(5.31)</p> <p>- (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로 대면 진료 시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 산정</p> <p>* 만 6세 미만 소아·임신부 24,770원 / 만 6세 이상 12,380원 (의원 기준)</p> <p>* 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전문가용 RAT 및 PCR 검사 당일 산정 불가</p>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영 및 수가 현행화</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20	<p>(양식) 참고 및 서식</p> <p>참고1 의료기관 감염병환자 신고체계</p>  <p>1. 확진환자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는 기타 해당법 등 법령상 보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내부) 또는 모바일 (외부) 접속을 통한 신고는 주소 등 환자의 인적 정보가 누락되는 등 부적합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사우생진) 결과 결과 음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주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주요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신고하고 <p>2. 사망환자 사망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련 보건소는 감염병환자용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p>개정(안)</p> <p>참고1 의료기관 감염병환자 신고체계</p> <p>1. 확진환자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신고 (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주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 <p>2. 확진환자 사망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p>[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검색을 통해 보고</p>	<p>개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내용 반영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22	<p>참고2 감염병 발생 신고서</p>  <p>1. 감염병 발생 신고서</p> <p>2.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p>	<p>개정(안)</p> <p>■ (삭제)</p>	<p>개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법정서식으로 지침 수록 불요
24	<p>참고3 감염병환자용 사망(검안) 신고서</p>  <p>1. 감염병환자용 사망(검안) 신고서</p> <p>2. 감염병환자용 사망(검안) 신고서 (양식)</p>	<p>개정(안)</p> <p>■ (삭제)</p>	<p>개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법정서식으로 지침 수록 불요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26	<p>참고1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p> <p>□ 재택치료로 진행</p> <p>◆ 자율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시·도 보건복지청(보건복지국, 보건복지부)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전화를 통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p> <table border="1" data-bbox="159 224 367 313"> <tr> <th>연락처</th> <th>주요 서비스</th> <th>주요 서비스</th> </tr> <tr> <td>보건복지부</td> <td>129</td> <td>129</td> </tr> <tr> <td>보건복지국</td> <td>02-1200-129</td> <td>02-1200-129</td> </tr> <tr> <td>보건복지부 콜센터</td> <td>129</td> <td>129</td> </tr> <tr> <td>보건복지부 콜센터</td> <td>129</td> <td>129</td> </tr> </table> <p>○ 재택치료자는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동반된 증상은 전화를 통해 의료기관 진료 요청</p> <p>※ 약 조제수령 비대면 처방에 따라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인 확인 후 방문하여 처방 가능. 필요 시 의료기관 방문으로 본인 확인은 지양하는 것을 권장하며 처방 전 7일 전까지 방문</p> <p>◆ 코로나19 의료기관별 연락처 목록</p> <p>○ PCR (신원진료소)</p> <table border="1" data-bbox="414 246 638 302"> <tr> <th>병원</th> <th>주소</th> <th>연락처</th> </tr> <tr> <td>서울대병원</td> <td>서울대병원</td> <td>02-3787-1234</td> </tr> <tr> <td>연세대학교</td> <td>연세대학교</td> <td>02-2123-4567</td> </tr> <tr> <td>고려대학교</td> <td>고려대학교</td> <td>02-2619-8765</td> </tr> </table> <p>○ 진료소(신원진료소)</p> <p>○ 진료소(신원진료소)</p>	연락처	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	보건복지부	129	129	보건복지국	02-1200-129	02-1200-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9	병원	주소	연락처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02-3787-123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02-2123-4567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02-2619-8765	<p>참고2 자율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p> <p>□ 자율치료 체계</p> <p>◆ 자율치료자는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p>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와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가능(병원급 의료기관 제외)</p> <table border="1" data-bbox="718 336 1133 481"> <tr> <th>코로나19 검사 (양성)</th> <th colspan="2">진료</th> </tr> <tr> <td rowspan="2">PCR (신원진료소)</td> <td>대면</td> <td>비대면</td> </tr> <tr> <td>독유기환자진료센터</td> <td>초유기환자진료센터</td> </tr> <tr> <td rowspan="2">전문기술 신속분류검사 (동네 병의원)</td> <td>대면진료</td> <td>의료상담센터</td> </tr> <tr> <td></td> <td>전화 상담처방</td> </tr> </table> <p>○ 자율치료자는 자율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필요시 처방 실시</p> <p>※ (약 조제수령)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대리인 또는 환자 본인이 수행하거나,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가능.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동네 약국받는 치료제는 지정 의료기관에 처방전 전송 가능</p> <p>□ 전화상담·처방 주요 내용</p> <p>○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감염병 확진자 초진 허용)</p> <p>○ (내용)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 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p> <p>○ (방식)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처방</p> <p>○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p> <p>※ 상세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름</p>	코로나19 검사 (양성)	진료		PCR (신원진료소)	대면	비대면	독유기환자진료센터	초유기환자진료센터	전문기술 신속분류검사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의료상담센터		전화 상담처방	<p>■ 격리권고 전환에 따른 자율치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반영</p>
연락처	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																																									
보건복지부	129	129																																									
보건복지국	02-1200-129	02-1200-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9																																									
병원	주소	연락처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02-3787-123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02-2123-4567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02-2619-8765																																									
코로나19 검사 (양성)	진료																																										
PCR (신원진료소)	대면	비대면																																									
	독유기환자진료센터	초유기환자진료센터																																									
전문기술 신속분류검사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의료상담센터																																									
		전화 상담처방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28	<p>참고5 전화 상담·처방 세부 절차</p> <p>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2.11부터 가능),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p>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p>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모든 동네약국(역내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p>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p> <p>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p>	<p>참고3 전화 상담·처방 세부 절차</p> <p>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p>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p>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p>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 라게브리오)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명단'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p>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p> <p>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p> <p>※ 상세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름</p>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반영</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p>■ (추가)</p> <p>참고4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행정안내센터</p> <p>□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자율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 **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지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가급적 야간·휴일도 운영 권장) ○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 **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능) 자율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먹는 치료제 등),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 ○ (추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 추가(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종료 <p>※ 상세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름</p> <p>□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자율치료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 ○ (운영시간) 자율 설정 ○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비대면진료도 포함</p> <p>- 확진자 비대면진료 전문기관인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관련 내용 안내</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29	<p>참고6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의료기관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진료 절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진찰</td> <td>진단검사</td> <td>진료처방</td> <td>조제</td> </tr> <tr> <td>기본 진찰상담</td> <td>(RAT) 신속항원검사 양성</td> <td>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td> <td>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td> </tr> </table> <p><small>* 먹는 치료제(엑스브리드, 라게브리오)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small></p> </div> <p>① (진료)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치료제¹⁾의 경우, 병용금지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절차(DU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7-2판)」 참고 <p>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권 송부*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처방전에 확진자(RAT 양성)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권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타(재)택치료 코드 기재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p>③ (전달) 약국에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비대면 유선 가능) 및 의약품 전달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항상 착용하며, 필요시 일회용 장갑, 안면 보호구 등 착용 - 환자가 직접 대면 수령 시 「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의약품 전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먹는 치료제를 처방시 투약기간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전화 상담 요청 필요시 대면진료 등 유의사항 안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약 중지 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지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div>	진찰	진단검사	진료처방	조제	기본 진찰상담	(RAT) 신속항원검사 양성	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p>참고6 자율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의료기관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진료 절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진찰</td> <td>진단검사</td> <td>진료처방</td> <td>조제</td> </tr> <tr> <td>기본 진찰상담</td> <td>(RAT) 신속항원검사 양성</td> <td>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td> <td>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td> </tr> </table> <p><small>* 먹는 치료제(엑스브리드, 라게브리오)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small></p> </div> <p>① (진료)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치료제¹⁾의 경우, 병용금지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절차(DU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참고 <p>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권 송부*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확진환자는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22.7.11~) <p>③ (전달) 약국에서 환자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직접 대면 수령 시 「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의약품 전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먹는 치료제를 처방시 투약기간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전화 상담 요청, 필요시 대면진료 등 유의사항 안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약 중지 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지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div>	진찰	진단검사	진료처방	조제	기본 진찰상담	(RAT) 신속항원검사 양성	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p>■ 현행 내용 반영</p>
진찰	진단검사	진료처방	조제																
기본 진찰상담	(RAT) 신속항원검사 양성	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진찰	진단검사	진료처방	조제																
기본 진찰상담	(RAT) 신속항원검사 양성	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31	<p>서식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p> <p>서식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p>	<p>서식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예시)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p> <p>서식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p> <p>우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 자율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라스루비드, 라게브리요) 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환자 진료센터입니다.</p> <p>귀하는 (불, 알, 시, 분)에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2022년 3월 14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별도의 유전자 검출(PCR)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판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p> <p>결과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양성 확인 통지 시 자율치료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등을 안내해 드리니 격리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자율치료 안내</p> <p>자율치료 중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진료) 및 의료상담센터(대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 및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도로, 도보, 개인차량 등 이용을 권장합니다.</p> <p>※ 코로나19 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 > <일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2) > <관속식> > <HRA소식> > <심폐중환자> > <생활안전지도> > <네이버다움> >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 의료상담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2) > <관속식> > <HRA소식> > <심폐중환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먹는 치료제 처방</p> <p>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스루비드, 라게브리요)는 ① 만60세 이상이거나 ② 면역저하자, ③ 만12세 이상이고, 다음 기준사항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처방 가능)</p> <p>*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신경 발달장애</p> <p>응급상환시</p> <p>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자율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34	<p>서식4 재택치료자 생활안내문(예시)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p> <p>재택치료자 생활안내문(예시)</p> <p>III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격리해제기간 동안 자택에만 계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필품 등은 온라인으로 우선 구매하세요. - 대면 진료 필요시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하시고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진료가 끝난 후 또는 처방약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격리해제)로부터 10일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대기를 권고합니다. 2) 음성결과 확인 이후에도 외출을 자제하시고, 출근·등교 등과 같은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자적 모임 및 교외행사 참여를 자제합니다. 3)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사, 중상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등) 4)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되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세요. <p>III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 KF94(또는 동급)마스크 반드시 쓰세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건통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얼굴을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p>III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해하지 않기 :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 잘 쉬기, 잘 먹기, 많이 마시기, 따르면 전통세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스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p>■ (삭제)</p>	<p>■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 종료 반영</p>

쪽	현행(3판)	개정(안)	개정사유																																												
	<p>사유 코로나19 PCR 검사지 대한민국 인체분 (해시) - 한국 표준: 코로나19에 유전자 검출을 위한 목적으로 총길이 100bp 이하의 DNA 조각을 검출하는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PCR 검사지 대한민국 인체분 (해시)</p> <p>(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 가능)</p> <p>①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시 가까운 원소중 진료기관에 방문 하셔서 대한민국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해로운 경우)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위생정보의 경우 진료비(방문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원소중 진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의료기관명</th> <th>위치</th> <th>전화번호</th> <th>주소</th> <th>주요진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의료기관은 계속 증가 중이며,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생활안전 지도 등에서 검색 가능합니다.</p> <p>② 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결과 음성에서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소중 진료기관에서 대한민국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③ 원소중 진료기관에서 진료 담당 역은 지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엑스포터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p> <p>④ 관련 4차 이상 또는 5차 이상 1차 이상의 면역력이 있는 가정(가족), 입원환자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제동항사(ABO) 30kg/m² 이상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능 함</p> <p>• 국제기준은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p> <p>①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시 가까운 원소중 진료기관에 방문 하셔서 대한민국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해로운 경우)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위생정보의 경우 진료비(방문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원소중 진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의료기관명</th> <th>위치</th> <th>전화번호</th> <th>주소</th> <th>주요진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생활민원)도 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p> <p>② 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결과 음성에서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소중 진료기관에서 대한민국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③ 원소중 진료기관에서 진료 담당 역은 지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엑스포터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p> <p>④ 관련 4차 이상 또는 5차 이상 1차 이상의 면역력이 있는 가정(가족), 입원환자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제동항사(ABO) 30kg/m² 이상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능 함</p>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주소	주요진료	○○○○	○○○	○○○-○○○-○○○	○○○-○○○-○○○	○○○	○○○○	○○○	○○○-○○○-○○○	○○○-○○○-○○○	○○○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주소	주요진료	○○○○	○○○	○○○-○○○-○○○	○○○-○○○-○○○	○○○	○○○○	○○○	○○○-○○○-○○○	○○○-○○○-○○○	○○○	<p>사유 코로나19 PCR 검사지 대한민국 인체분 (해시) - 한국 표준: 코로나19에 유전자 검출을 위한 목적으로 총길이 100bp 이하의 DNA 조각을 검출하는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PCR 검사지 대한민국 인체분 (해시)</p> <p>(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 가능)</p> <p>①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시 가까운 원소중 진료기관에 방문 하셔서 대한민국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해로운 경우)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위생정보의 경우 진료비(방문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원소중 진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의료기관명</th> <th>위치</th> <th>전화번호</th> <th>주소</th> <th>주요진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생활민원)도 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p> <p>② 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결과 음성에서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소중 진료기관에서 대한민국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③ 원소중 진료기관에서 진료 담당 역은 지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엑스포터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p> <p>④ 관련 4차 이상 또는 5차 이상 1차 이상의 면역력이 있는 가정(가족), 입원환자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제동항사(ABO) 30kg/m² 이상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능 함</p>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주소	주요진료	○○○○	○○○	○○○-○○○-○○○	○○○-○○○-○○○	○○○	○○○○	○○○	○○○-○○○-○○○	○○○-○○○-○○○	○○○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주소	주요진료																																											
○○○○	○○○	○○○-○○○-○○○	○○○-○○○-○○○	○○○																																											
○○○○	○○○	○○○-○○○-○○○	○○○-○○○-○○○	○○○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주소	주요진료																																											
○○○○	○○○	○○○-○○○-○○○	○○○-○○○-○○○	○○○																																											
○○○○	○○○	○○○-○○○-○○○	○○○-○○○-○○○	○○○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주소	주요진료																																											
○○○○	○○○	○○○-○○○-○○○	○○○-○○○-○○○	○○○																																											
○○○○	○○○	○○○-○○○-○○○	○○○-○○○-○○○	○○○																																											